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대한민국 대전환 <b>한국판뉴딜</b>  내 삶을 바꾸는 <b>규제혁신</b>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배포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 동 엽(02-2100-2960)	<b>담 당 자</b>	노 소 영 사무관 (02-2100-2963)	
	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공 인 식(044-202-2680)		강 태 수 사무관 (044-202-2684)	

## 제 목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보험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

### - 국민 의료비의 적정한 부담을 위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관리 근거 마련 -

□ 금융위원회(위원장 고승범)와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및 「보험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4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.

○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\*하는 상황 속에서,

\*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 : '11년 6.0% → '15년 6.7% → '19년 8.0%

-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('20년 3,907만명 가입)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○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이를 바탕으로 <sup>1)</sup>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<sup>2)</sup>비급여 관리 강화 <sup>3)</sup>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\* (예시)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,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 파악 → 관련 상품구조 개편, 비급여 관리 실시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기존에 **공사보험정책협의체\***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**협의·조정** 근거를 마련합니다.

\* 복지부 제2차관, 금융위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, 건보공단·심사평가원·금융감독원·보험연구원·민간전문가 등 참여(17년부터 운영)

- 법 통과 후 마련될 하위법령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'(가칭)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'로 규정할 예정

-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**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**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**실태조사 실시** 근거와,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**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** 근거를 마련합니다.

\*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,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

- 건보공단,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,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됩니다.

□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,

- 국회 통과 후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, (가칭)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